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I. 개정이유

-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이후 청소관련 전반 사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한 사무를 폐지코자 함.
- 지방행정의 구조조정 방침의 일환으로 지방조직의 감축을 위해 청소관련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마련

II. 주요골자

-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자(재산특례자 포함)”로 개정 (안 제24조)
- 동장에게 권한 위임한 조항 폐지 (안 제30조)
- 폐기물처리 관련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 마련 (안 제31조)

III.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행정의 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동장에게 권한위임 하였던 사무를 폐지하는 안으로
이는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 또는 동민의 집으로 전환되어 청소업무와 관련된 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30조(권한위임)의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폐지하자는 사항입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58조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제31조(업무의 위탁) 제1항 중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과 폐기물 처리 관련 사무”로 개정함은 청소업무의 위탁사항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과 재활용품 분리 수거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과 관급봉투 공급 등 폐기물 처리 관련 사무로 확대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관련법규, 그리고 청소행정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청소업무 위탁사항의 확대와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시설과 폐기물 처리관련 업무인 재활용품 분리 수거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과 관급봉투 공급 등 운영·관리의 지도·감독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